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28]

개요

I. 개요

-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작성

- 감사前 재무제표 기한 내 증선위 제출 엄수
 - 미제출시 공시 및 감사인의 절차 확인 등에 유의
- 2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회계위반시 외감법상 과징금(신설) 등이 부과될 수 있는바 결산절차와 내부감사 등에 더욱 신중
- 3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 관련 절차를 엄정히 실시하고 감사보고서에 기재
- 4

新IFRS 기준서 적용·공시 철저

- '18년 시행 기준서(수익, 금융상품)를 충실히 적용하고, '19년 시행 기준서(리스) 관련 공시 철저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II.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미제출시 공시)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

* 新외감법('18.11.1. 시행) §6 및 §30

①상장법인: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미제출시 기한 익일까지 증선위(금감원)에 사유 제출(증선위는 이를 공시)

②사업보고서 제출법인:법정기한 내 감사인에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 일 이내 사유를 공시

□ 증선위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

◦(감사인 확인)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 *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18.12.15. 시행)
 - ① 일치여부 확인:감사인·증선위에 각각 제출한 재무제표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
 - ② 내부통제 평가:불일치 또는 미제출시 내부통제 미비 여부를 평가
 - ③ 사후수정 확인: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이를 수정하는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는지 여부 확인

□ 한편, 新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 종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 주전*	정기주총일 4 주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 일	사업연도종료 후 60 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 주전*	사업연도종료 후 90 일(직전연도 자산 2 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 주전(별도) 또는 4 주전(연결)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총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 필요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새로 제정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 주요 위반 예시 >

- A 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 B 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 상장법인 C 사는 2017년 3월 2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17년 1월 18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17년 1월 19일(목요일)에 지연제출
- D 사는 별도재무제표는 직접 작성하였으나,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분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감사인에게 요구

※ 참고 보도자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14.9.30.)
- 비상장법인 190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16.11.2.)
- 115개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조치('16.12.7.)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17.3.15.)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2.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신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新외감법 시행('18.11.1.)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

①(조치종류)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등 조치 신설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절대금액 한도 없음) >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②(조치대상)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 및 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 조치

*주권상장, 금융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소홀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유의사항]

□(회사·감사인)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종전보다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예시)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3.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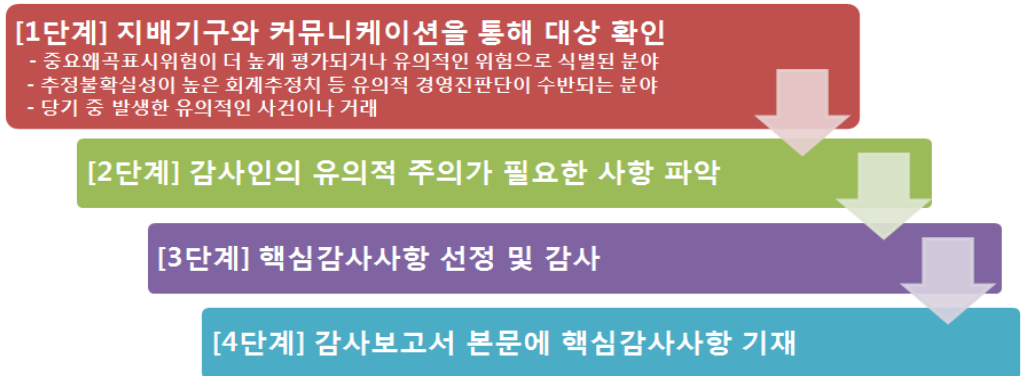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등과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18 년은 자산 2 조원 이상만 해당)

※ 자산 2 조원 미만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재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등 개정('17.12 월)
 - ①(항목선정)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
 - *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회사의 판단이 수반되는 회계추정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이나 거래 등 해당 기간 감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②(결과보고)감사보고서 본문에 각 KAM 의 선정이유,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및 그 결과 등을 기재

< KAM 선정 및 기재 절차 >



< KAM 기재 시행시기 >

상장사 규모*	시행시기
자산 2 조원 이상	'18년 감사보고서
자산 1 천억원 이상	'19년 감사보고서
전체 상장사	'20년 감사보고서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해외의 KAM 기재사례 >

□핵심감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 개~6 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 개~6.0 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 개 등

-주로 회사의 판단이 필요한 재고자산, 영업권 등 자산의 손상평가, 파생상품 등 공정가치 평가, 수익인식 등을 KAM으로 선정

[유의사항]

□(감사인)내부감사 등과 상호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등을 적절히 KAM 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더욱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충실히 기재 필요

□(회사)회사는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17.12.20.)

**新 IFRS 기준서
적용 및 공시 철저**

4. 新 IFRS 기준서 적용 및 공시 철저

◆'18 년부터 시행된 新수익기준서(K-IFRS 제 1115 호), 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 1109 호)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합니다.

◆'19 년부터 시행되는 新리스기준서(K-IFRS 제 1116 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가. '18 년부터 시행된 新회계기준서 : 수익, 금융상품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익(1115 호)과 금융상품(1109 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18 년부터 최초 적용

◦新기준서의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K-IFRS 제 1115 호)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5 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재무제표 작성

*①계약 식별 → ②수행의무 식별 → ③거래가격 산정 →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K-IFRS 제 1109 호) 금융자산은 현금흐름 특성*1 과 사업모형*2 에 따라 분류*3 하고, 금융상품 손상평가시(대손충당금 설정) 기대신용손실을 반영

*1 현금흐름 특성: ①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경우, ②그 외의 경우

*2 사업모형: ①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②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매목적, ③기타(매매 등)

*3 분류:①상각후원가 측정,②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③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석공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 과거 재무제표 조정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상태 변동 등을 정보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향공시를 충실히 할 필요

나. '19 년부터 시행되는 新회계기준서 : 리스

□(주석공시)'19 년부터 적용되는 리스(1116 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하므로,

◦'18.1 월 배포한 「사전영향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 新기준서의 주요 내용 >

□(현행)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 계약에 대해 별도의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급리스료만 비용으로 인식

□(개정)거의 모든*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가 증가

* 단기(12 개월 미만) 또는 소액(예:기초자산 \$5,000 이하) 리스는 현행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가능

[유의사항]

□(회사·감사인)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되지 않도록 新회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무제표 본문·주석을 충실하게 작성·감사할 필요

※ 참고 보도자료

- 新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18.1.15.)
- IFRS 금융상품 新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18.6.29.)
- '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18.11.6.)

향후 계획**III. 향후 계획**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시 조치할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8년도 세법 후
속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 소득세법 시행령

(1) 기타소득으로 구분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 규정(소득령 §41, 87)

< 법 개정내용(§19, 21) >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 허용**
- *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
- **일정규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 대상 기준 규정 ○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60%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장소(주차장 등) 등 대여하여 연소득이 연 500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을 허용하여 세부담·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소득령 §118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대상(소득령 §122의2)

< 법 개정내용(§64의2) >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되, 임대주택 등록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 × 14%

○ 임대주택 등록 등 구체적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input type="checkbox"/>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input type="checkbox"/>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개정이유> 분리과세세액 계산시 우대 적용(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되는 요건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input type="checkbox"/>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input type="checkbox"/> 보유기간 요건 강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0 auto;"> <p>(좌 동)</p> </div>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 *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소득령 §154^⑩, §155^⑳)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거주요건) 2년 이상 거주 ○ (대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이외의 거주주택 - 거주기간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에 2년이상 거주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기존에 사업자 등록 등 필요)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 2년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거주주택 거주요건 명확화 및 비과세 횟수 제한 ○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 장기임대주택 보유의 경우는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전환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만 비과세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합리화

<적용시기>

- ① (거주기간 요건 명확화)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②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6)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소득령 §163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금액 ○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적용대상 자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p>*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p>

<개정이유>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절차 등 신설(소득령 §217, 227신설, 법인령 §164의5, §166 신설)

—<법 개정내용(소득법§165의4, 176, 법인법§121의4,123)>—

<input type="checkbox"/>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 명세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제재) 미소명·허위 소명시 20% 상당액의 과태료 부과 ○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과태료 부과 제외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취득자금 출처 소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input type="checkbox"/> 소명기한 연장(60일) 사유(부득이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소명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정당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재지변, 화재·재난 및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멸실되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② 현지 국가의 사정 등으로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한 경우

<개정이유>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신설에 따른 소명 방법, 소명기한 연장 사유 등 세부절차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신설(소득령 §180, 법인령 §133)

<법 개정내용(소득법 §120, 법인법 §94)>

- | |
|--|
|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적으로 연결된 단일사업을 특수관계인과 분할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여부 판정 <p style="text-align: center;">⇒ 특수관계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p> |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의 범위 ○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법인령 §131②의 특수관계 준용)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소득령 §183의2②의 특수관계 준용) - 비거주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국내사업장 판정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 법인세법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법인령 §19제17호)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범위 확대 ○ (좌 등)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감가상각방법 개선(법인령§29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 분할·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기준 변경 ○ 시가 →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지급수단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법인령 §158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input type="checkbox"/> 적격 지출증명서류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display: inline-block;">(좌 동)</div> ○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

※ 「'19년 경제정책방향」기 발표내용('18.12.17)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좌 동) < 삭 제 >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3. 조세특례제한법

(1)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조특령 §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 (좌 동) ○ 연구·인력개발 목적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출연금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2)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조특령 §9,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input type="checkbox"/> 위탁 R&D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화

(3)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관련 서식 ○ 세액공제 신청서, R&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 신 설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좌 동) ○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등* 작성·보관 *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 ○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계획서·보고서 함께 제출

<개정이유> R&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 (심의 대상) 일반·신성장 R&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 (운영방법)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

<개정이유> 기업들의 R&D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8)

< 법 개정내용(§99의9) >

- 위기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 신설
 - *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 (시행령 위임)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서비스업 정의,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정세액 계산방법, 감면 신청방법
 -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자누계액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29세(병역의무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div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div>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추정세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서비스업의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input type="checkbox"/> 감면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다른 지역특구 감면제도에 준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령 §20에 따른 성과급 등*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범위 조정 ○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보험료 < 삭 제 >

<개정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

(7)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의3)

< 법 (§28의3) 신설 내용 >

- 다음의 자산을 '19.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그 외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 투자자산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의 범위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 사업용 고정자산(법인령 §28⑥)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조특법 제11조)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조특법 제25조의5)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개정이유>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특수관계 범위 합리화(상증령 §2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의 범위 ○ 친족(「국기령」 §1의2①) 및 사돈 ○ 사용자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 현직 임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범위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좌 동) - 5년 → 3년,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은 5년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상증령 §15⑬)

< 법 (§18) 개정내용 >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징 ○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 (개정전) 가업용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시 공제금액 전액 추징 ⇒ 추징금액 계산시 공제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산 유지의무 위반시 추정금액 ○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정율* * (7년 미만)100% (7~8년)90% (8~9년)80% (9~10년)70%(영 ⑬2호)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전액×자산 처분비율*×기간별 추정율 *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용자산의 가액 (영 §15⑩)

<개정이유> 기업용자산 처분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기업상속 후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확대(상증령 §49①.②.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매매·수용·경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 (상속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 ○ (좌 동) ○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개정이유> 증여세 과세시 시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부가령 §71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영수증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연장 ◦ 3개월 → 6개월 이내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원칙)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명칭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input type="checkbox"/>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 (좌 동) ◦ 예외적 공제허용 사유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p>< 추 가 ></p>	<p>①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p>
<p>< 추 가 ></p>	<p>②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p>

<개정이유>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부가령 §96의2)

< 법 개정내용(§53의2) >

<p><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광고.중개용역’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 '15.7월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앱.게임.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p> <p style="margin-left: 20px;">**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p> <p>○ 중개용역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p> <p style="margin-left: 20px;">*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국내 사업자.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제외</p> <p>○ 국내에서 물품,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p> <p>○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p>

<개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부가령 §108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가산세율) 공급가액 × 0.5% ◦ (대상)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아래의 경우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 추 가 > < 추 가 >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 (좌 동) ◦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 - (좌 동)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개정이유>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가산세 부과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상수수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6.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부관련 가산세율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input type="checkbox"/>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 (좌 동)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 「'18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8.7.30.)

<개정이유> 사업 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되, 선의의 사업양수인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국조령 §50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 처분 권한 보유 등 ○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 (신고의무자) 내국법인 - (신고요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input type="checkbox"/> 실질적 소유자 범위 확대 ○ (좌 동) ○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요건 합리화 - 거주자 포함 -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하여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친족관계) 및 나목(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 관계) 준용

<개정이유>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2018.12.27)

 -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는 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각종 원격 컴퓨터 서비스로 2006년에 공식 런칭하여 기타 웹 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들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대신,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AWS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AWS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내의 사용자와 AWS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정산하여 산정하되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정산 내용은 AWS가 제공하며 AWS에게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하 "support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의 약 1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임. AWS는 유선이나 웹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엔지니어가 방문하는 형태는 아님.
 - 미국 IT 기업에게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2018.12.27)

 -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 판매권을 부여받아 본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 가격결정권이 있는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들과 본건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본건 서비스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